



1990년대의 환경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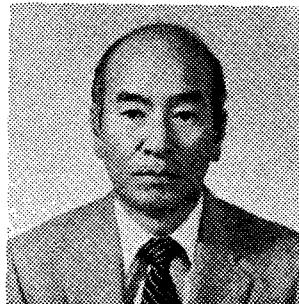
지난 30년간의 고도경제성장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도시화, 산업화의 부산물로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는 경제성장의 속도를 능가하여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제는 전국각지에서 현실적으로 그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도시공업단지는 물론 그 주변의 대기오염은 과거에 그런 유례가 없을만치 심화되고 국민의 건강 피해를 비롯하여 농작물, 산림피해와 각종시설물의 부식으로 인한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성우의 영향은 토양의 산성화로 식물 성장에도 지대한 피해를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막대한 양의 토사가 유출되고 하천에 퇴적되어 흉수, 범람, 수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도시와 공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막대한 양의 하수와 폐수량은 용수량의 증대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한정된 하천에 유입되어 전국하천은 종류에서부터 극심한 수질오염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서 도시급수원이 위협을 받고 상대적으로 땅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이를 취수지마저도 상류의 각종 오염배출원이 증가하여 예외없이 부영양화현상이 유발되어 상수원을 위협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 그리고 산업장에서 배출되는 막대한 양의 폐기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그 처분은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고 있어 광대한 매립지가 요구되고 있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매립지선정이 중대한 사회적저항에 부딪히고 있으며 과거의 무질서한 매립으로 악취, 발진,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등으로 환경악화를 유발하고 있다.



권숙표 / 연세대학교 교수
분지 편집위원

영등으로 중대한 환경악화를 유발하고 있다.

농약을 비롯한 각종 유기화합물이 산업발전과 병행해서 그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것이 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임해도시, 임해공단, 항만, 어장, 선박에서 유출되는 폐유폐기물에 의한 해양오염은 해양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연안수역의 어업에 지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도시, 공단, 공항부근의 소음은 거의 방치상태에 있다. 이와같이 환경오염과 자연파괴가 심화되고 광역화하고 그 피해가 다양하게 증대하게 된 원인은 과거 약30년간의 경제발전위주의 무질서한 개발위주에서 환경문제는 관례적으로 경시되고 그 대책은 의식적으로 회피되어왔는데에 기인하고 있다.

협소한 국토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토지수요가 높아지고 소비가 증대하면서 수질원, 에너지, 기타 자원수요가 크게 증가하는데 이것은 바로 전국

적인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의 현상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수자원이 크게 한정돼 있어 이러한 환경파괴현상은 선진공업국보다 빨리 나타나기 마련이다.

과거 30년간의 경제발전과정에서는 소위 「공해」는, 기업과 정부에서는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되었고 지역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그 사실을 은폐하거나 부분적으로 사후대책을 강구하는 비봉책이었다.

과거에 정부의 적극적인 환경보전대책에 제동을 걸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국민과 기업의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에 있었다. 지역주민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무차별로 오염산업을 지역에 유치하였고 기업은 오염방지대책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주민에게 돌리는 사례가 도처에서 발생하였다.

제도적인 결함에서도 환경오염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다. 현행환경보전법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정부, 정부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고 또, 평가자는 개발사업자가 되어 있으며 평가기준은 현행 환경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체사업이 외의 더욱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과 객관적 평가가 지역특성을 도외시한 평가가 되어 사실상 영향평가의 효과가 상실되고 있다. 특히 환경기준은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을 막론하고 극히 한정된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인 오염수치를 나열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생태계, 인간의 건강, 자원의 보전을 보장하는 환경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단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원의 특성에 따라 환경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배출기준이 적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이 출현하는 환경오염물질이나 현상은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다. 환경보전의 목적이 국민의 건강, 생태계와 자원의 보전, 더욱 나아가서 지속적인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환경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은 한정된 오염물의 개별적인 기준에서 탈피하여 더욱 광범위한 기준을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설정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과거의 피상적인 행정적 기준을 적용한 결과는 모든 대상이나 방지기술, 투자가 규제치를 만족시키는 대상에 그치고 더욱 광범위한 피해원을 방치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작년 8월에 한강을 수원으로 하는 서울 취상수원수가 고도로 오염되어 식수로서 부적합하다는 보도에 시민은 과거의 불안을 현실로 확인하게 되었고 일상생활에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지만 정부의 대책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위기감은 쇠퇴되고 취상수원의 수질보호지역 지정마저 보류시키고 말았다.

이것은 환경보전관리주체가 다기적이고 분산되어 있어 각부처 행정간의 상충이 표출된 결과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해양오염방지, 자연보전, 폐기물 처리, 국제적 환경보전대책이 과거의 관계부처의 행정권한을 고수하고자 하는 폐단에서 관리상의 사각을 노정하고 있다.

향후 90년대는 다가올 21세기를 향해서 과거에 구축된 산업기반의 일대 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전환기가 될 것이다며 지방자치제의 실태와 더불어 지방에 산업유치가 성행되고 토지이용수자원과에너지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파괴, 환경오염은 과거 30년간의 결과를 능가하는 피해가 예상된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문화적 욕구가 향상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개발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환경청 설치 후 10년 만에 그동안 환경행정의 결함을 일소하고 적극적인 관리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환경처로 승격시키고 정책 결정의 차원에서 차장을 국무위원인 장관으로 승격시켰다. 이것은 환경문제를 국가정책 차원에서 관리하자는 의지의 표면이라고 보고 90년대의 환경보전시책에 대한 기대를 걸어본다.

그러나 환경처 승격은 과거 환경청의 연장이고 그 관리범주를 담습하는 것이라면 과거에 청으로서 제약된 관리체계에 대한 기대 이상을 바랄 수 없을 것으로 과감한 행정쇄신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